

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37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 : 2015. 9. 1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환불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환불대상 범위가 좁아 허가신청자들의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점용료 환불규정 중“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**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.**”로 개정(안 제27조제3항)
- 나. 환불대상에 “**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**” 신설(안 제27조 제3항제3호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5년 8월 10일 ~ 8월 20일(10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부서협의기간 : 2015년 8월 10일 ~ 8월 20일(10일간)
- 나. 협의내용 : 성별영향평가(해당없음)

9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

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11조”를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별표 1”을 “별표 1과 같고,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9호 중 “시장”을 “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축법”을 “「건축법」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.
- 3.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부서명 | | 공원녹지과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입안자 | 부서장 직위·성명 | 공원녹지과장 전진호 |
| | 팀장 직위·성명 | 공원관리팀장 염규진 |
| | 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 | 석민규 (790-5664) |

신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----- -----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3조(계획의 수립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1조</u> ----- -----.</p> | <p>제3조(계획의 수립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-----.</p> |
| <p>제5조(녹화기준) ----- ----- <u>별표 1</u> ----- ----- -----.</p> | <p>제5조(녹화기준) ----- ----- <u>별표 1과</u> 같고, ----- -----.</p> |
| <p>제6조(녹화지역의 설정 등) 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~ 8. (생략) 9. 그 밖에 <u>시장</u>이 녹지의 보전·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</p> | <p>제6조(녹화지역의 설정 등) 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~ 8. (생략) 9. ----- <u>하남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-----</p> |
| <p>제21조(녹화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<u>건축법</u>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. 1. ~ 4. (생략)</p> | <p>제21조(녹화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「<u>건축법</u>」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27조(점용료의 납부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</p> <p>2.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27조(점용료의 납부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<u>3.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</u></p> |

《 관계법령 발췌서 》

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

제41조(점용료의 징수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